

의안번호	제 261 호
의 결 연 월 일	2015년 10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

발 의 자	김양희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5년 10월 2일

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61
----------	-----

(김양희 의원 대표발의)

발의연월일 : 2015년 10월 2일

발의자 : 김양희, 윤희창, 정영수,
이종욱, 박봉순, 윤병운의원

1. 제정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에 따라 교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지원의 교육감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교원단체의 범위를 규정함 (안 제3조)
- 나.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 (안 제4조)
- 다. 보조금 교부신청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교육기본법」, 「지방재정법」, 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등에 관한 법률」
- 나. 관계부서협의 : 충청북도교육청 진로인성교육과 협의완료
- 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- 라. 입법예고
 - 1) 기 간 : 2015. 9. 3. ~ 2015. 9. 21.(20일간)
 - 2) 제출의견 : 특이사항 없음

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이 교원단체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보조금의 교부)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교원단체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원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제3조(교원단체의 범위) “교원단체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주된 사무실을 충청북도에 두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.

1. 「교육기본법」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원단체
2. 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원의 노동조합

제4조(보조사업의 범위) 교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교육감은 해당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1.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
2. 교원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
3. 충청북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
4. 그 밖에 교육감이 충청북도 교육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보조금의 교부 신청) ① 제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받으려는 교원단체는 그 사업의 목적과 내용, 경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교원

단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교원단체는 교육감의 보완 요구를 수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보완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교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6조(준용) 교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와 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원단체에 교부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.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재정법

제17조 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<개정 2014.5.28.>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공공기관"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4.5.28.>

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
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
□ 교육기본법

제15조(교원단체) ①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, 교원의 경제적·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.

□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
제4조 (노동조합의 설립) ① 교원은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단위 또는 전국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.

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- 교직원단체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지원
- 교직원단체가 교원의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 지원
- 충청북도교육청과 교직원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

2. 관련 조문

- 제4조 보조사업의 범위

3. 비용추계 결과

가. 추계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비 고
교원 전문성 신장사업	18,000	18,000	18,000	18,000	18,000	
교원 교육활동 여건 조성 사업	9,000	9,000	9,000	9,000	9,000	
충청북도교육청과 교직원단체의 공동추진사업	0	0	0	0	0	사업발생시 보조금 지원
계	27,000	27,000	27,000	27,000	27,000	

나. 재원조달방안 : 자체 재원

4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5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진로인성교육과 교원단체담당 이병래
연락처	043-290-2291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계
세입	-	-	-	-	-	-	-
	소계						
세출	교원 전문성 신장사업	18,000	18,000	18,000	18,000	18,000	90,000
	교원 교육활동 여건 조성 사업	9,000	9,000	9,000	9,000	9,000	45,000
	충청북도교육청과 교직원단체의 공동추진사업	0	0	0	0	0	0
	소계	27,000	27,000	27,000	27,000	27,000	135,000
재원 조달		27,000	27,000	27,000	27,000	27,000	135,000
국 비							
시비	소 계	27,000	27,000	27,000	27,000	27,000	135,000
	일반회계						
	특별회계	27,000	27,000	27,000	27,000	27,000	135,000
	기 금						
군·구비							
민 간							
기 타							